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76
----------	------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금융투자가 보편화되자 실제로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임.
- 이에 청소년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76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금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국제 금융위기, 실업 및 조기퇴직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이 소비와 투자, 신용관리 등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금융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고위험 금융자산투자에 참여하는 등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OECD는 개인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해 2005년부터 학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고¹⁾, 이를 위해 「학교 금융교육 가이드라인」 및 「금융교육 학습체계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국가 차원에서 학교 금융교육의 합리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²⁾.
-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학교 금융교육을 강조해왔는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 문해력 및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주(州) 단위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2006년에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대부분 금융교육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사례들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습니다.³⁾

1) OECD(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2) OECD(2012). OECD INFE Guidelines on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3) 기획재정부(2019). 주요 선진국의 경제교육 동향과 시사점.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금융감독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 금융교육의 내용체계와 학습목표 등을 정립한바 있으며⁴⁾,

이후 2020년 11월에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개정하여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보강한 바 있습니다.

- 한편 국회에서는 이러한 금융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바⁵⁾,

동 조례안은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세계적, 국가적 흐름에 따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4) 금융감독원(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보고서.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1.3.25., 법률 제17292호) 제30조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 4조),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및 시범학교 지정·운영(안 제5조, 안 제6조), 교원연수 지원 및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규정하여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동 계획 수립 시,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에 의한 대규모 재정 손실 등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와 함께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⁶⁾.
-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의 수준이 각 개인의 금융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학교 교사의 금융교육에 대한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5.).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표-1]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주요 내용

	현 황	개선 기본방향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배포 관련, 교육기관들 간 협업,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중복 개발,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금융이해력 지도” 설계 ■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 콘텐츠 인증제 도입(“finance sense”)
전달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 신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일반 개인의 교육접근성이 낮음 ■ 온라인 콘텐츠 난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 확보 ■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적극 활용
교육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 ■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DB 구축 ■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단발성 강의 위주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토론회, 공모전 등 활성화 ■ (고령층) 사후 관리프로그램(전화상담 등) 도입 ■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모임 프로그램 도입
학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통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에서 각각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금융교육 기획·총괄 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역할 강화(「금융교육 운영규정」 제정) ■ 지역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 ■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 검토

○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는 학생들에 대한 내실있는 금융 교육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금융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라는 표현이 ‘교원 외 전문가 또는 새로운 인력 채용’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교육 전문 인력’ 을 ‘금융교육 담당 교원’ 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 그러나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는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 한다는 의미 보다,

금융교육 전문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교원 이외 금융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담당교원으로 내용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국가 차원의 학교 금융교육 방향도 민간교육 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교원 이외 금융 전문가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 내용이 학생 금융교육의 내실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